

	<h2 style="margin: 0;">교직원보수규정</h2>	규정번호	3-2-2
		제정일자	2000.03.01.
		개정일자	2026.03.01.
		개정차수	13차
		소관부서	행정지원처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교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 [별표 3]에 따른 연봉제 교원의 보수는 계약당시 책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기준 및 연봉은 교원에게 부여하는 책무를 토대로 교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총장이 정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2026.03.01. 이후 신규 임용된 일반전임교원의 보수는 교원성과연동형연봉제규정을 따른다. <신설 2026.03.01.>

④ 비정규 직원(기간제 및 무기계약직)의 보수는 비정규직관리규정, 조교의 보수는 조교인사규정을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보수”라 함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연봉제 교직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2. “봉급”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재직기간, 직급별,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.
3. “수당”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.
4. “보수의 일할계산”이라 함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연봉월액”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
### 제2장 봉 급

제4조(호봉) 교직원의 호봉의 확정 및 승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며 인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5조(봉급) ① 교직원의 봉급 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의한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.

② 연봉제 교원의 봉급 월액은 그 밖의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

③ 비정규 직원(기간제 및 무기계약직)과 조교의 봉급 월액은 그 밖의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

제6조(보수지급일) 보수 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, 보수 지급일이 공휴일이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전에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보수의 계산) 보수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.

1. 월 보수의 산정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하며, 일당급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.

2. 신규임용, 복직, 승급 및 감봉 또는 이 규정 개정의 경우에는 발령일 또는 시행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계산한다.
3.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, 그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. 다만,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면직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4. 장기연수의 허가를 얻어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교·직원의 연수기간 중 급여에 대하여는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

제8조(보수의 소급)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었을 때는 대학의 관련보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수 당

제9조(정근수당) 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직원에게는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구분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.

1.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교직원에게 지급한다.
2.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교직원에게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신규 임용된 자와 휴직된 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 기간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$$\text{지급금액} = \text{정근수당액} \times \frac{\text{실제 근무한 기간(월)}}{6(\text{월})}$$

④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근무년수에 따라 매월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.

⑤ 정근수당지급구분표의 근무년수는 당해 교직원의 학교법인새빛학원 근무년수를 말한다.

제10조(보전수당) 교원 중 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매월 2만원의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가족수당) ①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한다.

② 가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교·직원은 수당신청서,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행정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부양가족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2조 삭제 <2025.07.01.>

제13조(연구보조비 및 직급보조비) ①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보조비를, 직원에 대하여는 직급보조비를 매월 지급한다.

② 연구보조비와 직급보조비 동액으로 특별연구보조비와 특별직급보조비 명목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금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초과강의료) 교원이 정해진 책임시간 이외의 담당 강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초과근무수당)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

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관리업무수당)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주요 보직자에 대하여 매월 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보직수당) 교직원 중 [별표 1]에서 정한 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가계보조비) 5급 이하의 직원 중 결혼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가계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정액급식비)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직원에게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.

제20조(명절휴가비) 설날과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교·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.

제21조(학생지도비 및 학사지도비)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·원에게는 학생지도에 필요한 학생지도비를, 직원에게는 학사 행정에 대한 학사지도비를 지급한다.

제22조(연가보상비) 직원이 연가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 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.

제23조(책임수당) 예산의 범위 안에서 [별표 2]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교·직원에게 책임명목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4조(업무추진수당) 교·직원 중 교·무위원과 총장이 정하는 주요 보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업무추진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25조(성과수당)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교·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보 칙

제27조(준용규정) 보수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, 기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 년 4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8 년 6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제12조(자녀학비보조수당)와 제17조(보직수당)[별표1]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